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443호 2018. 3. 21. (수)

【고 시】

- 정선군 고시 제2018-30호 정선 군관리계획(도로:소로3-42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3
- 정선군 고시 제2018-31호 정선 군관리계획(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5
- 정선군 고시 제2018-32호 도로 노선의(변경) 고시(군도).....14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18-278호 정선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및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공고.....15
- 정선군 공고 제2018-302호 정선군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25
- 정선군 공고 제2018-30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26

고 시

정선군 고시 제2018-30호

정선 군관리계획(도로:소로3-42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정선 군관리계획(도로:소로3-42호선)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변경 결정하고,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3월 16일

정 선 군 수

가. 결정(변경) 취지 : 정선읍 애산리 599-14번지 일원의 기 개설된 소로3-42호선이 기존 계획선 및 종점부와 접하는 연계도로인 소로3-39호선의 계획선과 일부 일치하지 않아 금회 개설현황을 반영하여 군관리계획으로 변경하는 사항임

나. 위 치 :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599-14번지 일원

다. 정선 군관리계획(도로:소로3-42호선)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42	6	국지 도로	66	소로 2-9 애산리 599-14대	소로 3-39 애산리 599-9전	일반 도로	-	강고제15호 (1992.2.13)	
변경	소로	3	42	6	국지 도로	66	소로 2-9 애산리 599-50대	소로 3-39 애산리 599-46전	일반 도로	-	강고제15호 (1992.2.13)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소로3-42	소로3-42	◦ 선형 변경 -B=6m, L=66m	◦ 기 개설된 소로3-42호선 현황 반영에 따른 선형 변경

라. 정선 군관리계획(도로:소로3-42호선)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도 :
실음생략 (정선군청 도시건축과 비치)

정선군 고시 제2018-31호

정선 군관리계획(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정선 군관리계획(주차장)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변경 결정하고,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3월 16일

정 선 군 수

가. 결정(변경) 취지 : 정선군고시 제2016-25호(2016.4.15.)로 최초 결정 된 주차장의 진출입로 계획 중 일부 부지에 대한 민원 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군관리계획으로 변경하는 사항임

나. 위 치 :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744-1번지 일원

다 정선 군관리계획(주차장)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1	노외주차장	정선읍 북실리 744-1 일원	2,589	감) 3.4	2,585.6	정선고 제2016-25호 (2016.04.15.)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1	노외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 면적(A) : 2,589㎡ → 2,585.6㎡ (감 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주차장 진출입로로 계획 된 744-6번지에 대한 민원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진출입로 변경

라. 정선 군관리계획(주차장)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도 : 실음생략
(정선군청 도시건축과 비치)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지정
도로 노선의 변경 고시
 폐지

정선군 제2018- 32호

도로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제21조제3항

도로 노선을 다음과 같이 지정
 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폐지

2018년 3월 14일

정 선 군 수

구 분	<input type="checkbox"/> 지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존	<input type="checkbox"/> 폐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변경
도로의 종류	군 도	군 도
노선번호	1호선	1호선
노선명	여량~반천	여량~반천
기점	여량면 여량리 130-6	여량면 여량리 130-6
종점	임계면 반천리 603-2	임계면 반천리 603-2
주요 통과지	-	여량면 봉정리
총연장(킬로미터)	9.5	10.6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되는 구간	구간	
	연장 (킬로미터)	

작성방법

1. 지정국도는 기존 일반국도 노선번호에 "-중 지정국도"를 추가하여 기입합니다.(예시: 일반국도 제1호 중 지정국도)
2. 기점·종점은 행정구역을 읍·면·동 및 지번까지 적고, 주요 통과지 및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되는 구간은 읍·면·동까지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신문용지 54g/m²)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지정
도로 노선의 [✓] 변경 고시
[] 폐지

정선군 제2018- 32호

[] 제19조제1항 또는 제20조제4
도로법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 제21조제3항

[] 지정
도로 노선을 다음과 같이 [✓] 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 폐지

2018년 3월 14일

정 선 군 수

구 분	[] 지정 [✓] 기존	[] 폐지 [✓] 변경
도로의 종류	군 도	군 도
노선번호	2호선	2호선
노선명	조동~북실	방제~북실
기점	신동읍 방제리 434-18	신동읍 방제리 434-18
종점	정선읍 북실리 616-2	정선읍 광하리 761-3
주요 통과지	남면 광덕리	남면 광덕리, 정선읍 북실리
총연장(킬로미터)	34.4	47.38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되는 구간	구간	신동읍 가사리, 남면 낙동리
	연장 (킬로미터)	6.6
		신동읍 가사리, 남면 낙동리, 정선읍 용탄리
		9.3

작성방법

1. 지정국도는 기존 일반국도 노선번호에 "-중 지정국도"를 추가하여 기입합니다.(예시: 일반국도 제1호 중 지정국도)
2. 기점·종점은 행정구역을 읍·면·동 및 지번까지 적고, 주요 통과지 및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되는 구간은 읍·면·동까지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신문용지 54g/㎡)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지정
도로 노선의 [✓] 변경 고시
 [] 폐지

정선군 제2018- 32호

[] 제19조제1항 또는 제20조제4
 도로법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 제21조제3항

[] 지정
 도로 노선을 다음과 같이 [✓] 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 폐지

2018년 3월 14일

정 선 군 수

구 분	[] 지정 [✓] 기존	[] 폐지 [✓] 변경	
도로의 종류	군 도	군 도	
노선번호	3호선	3호선	
노선명	용탄~숙암	용탄~숙암	
기점	정선읍 용탄리 667-2	정선읍 용탄리 667-2	
종점	북평면 숙암리 산1	북평면 북평리 521-5	
주요 통과지	정선읍 덕송리, 북평면 문곡리 북평면 나전리, 북평면 숙암리	정선읍 덕송리, 북평면 문곡리 북평면 나전리	
총연장(킬로미터)	39.5	23.3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되는 구간	구간	정선읍 덕송리, 북평면 북평리	-
	연장 (킬로미터)	2.24	-

작성방법

1. 지정국도는 기존 일반국도 노선번호에 "-중 지정국도"를 추가하여 기입합니다.(예시: 일반국도 제1호 중 지정국도)
2. 기점·종점은 행정구역을 읍·면·동 및 지번까지 적고, 주요 통과지 및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되는 구간은 읍·면·동까
지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신문용지 54g/m²)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지정
도로 노선의 변경 고시
 폐지

정선군 제2018- 32호

제19조제1항 또는 제20조제4
 도로법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제21조제3항

도로 노선을 다음과 같이 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폐지

2018년 3월 18일

정 선 군 수

구 분	<input type="checkbox"/> 지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존	<input type="checkbox"/> 폐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변경
도로의 종류	군 도	군 도
노선번호	4호선	4호선
노선명	선평~가수	낙동~가수
기점	남면 낙동리 190-4	남면 낙동리 190-4
종점	정선읍 가수리 198	정선읍 가수리 198
주요 통과지	남면 광덕리	남면 광덕리
총연장(킬로미터)	11.22	12.95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되는 구간	구간	남면 낙동리, 광덕리
	연장 (킬로미터)	4.24

작성방법

1. 지정국도는 기존 일반국도 노선번호에 "-중 지정국도"를 추가하여 기입합니다.(예시: 일반국도 제1호 중 지정국도)
2. 기점·종점은 행정구역을 읍·면·동 및 지번까지 적고, 주요 통과지 및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되는 구간은 읍·면·동까지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신문용지 54g/㎡)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지정
도로 노선의 [✓] 변경 고시
[] 폐지

정선군 제2018- 32호

[] 제19조제1항 또는 제20조제4
도로법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 제21조제3항

[] 지정
도로 노선을 다음과 같이 [✓] 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 폐지

2018년 3월 18일

정 선 군 수

구 분	[] 지정 [✓] 기존	[] 폐지 [✓] 변경
도로의 종류	군 도	군 도
노선번호	5호선	5호선
노선명	임계~송현	임계~임계
기점	임계면 임계리 459-3	임계면 임계리 459-3
종점	임계면 임계리 산526	임계면 임계리 1296-1
주요 통과지	-	-
총연장(킬로미터)	7.0	5.72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되는 구간	구간	-
	연장 (킬로미터)	-

작성방법

1. 지정국도는 기존 일반국도 노선번호에 "-중 지정국도"를 추가하여 기입합니다.(예시: 일반국도 제1호 중 지정국도)
2. 기점·종점은 행정구역을 읍·면·동 및 지번까지 적고, 주요 통과지 및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되는 구간은 읍·면·동까
지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신문용지 54g/m²)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지정
도로 노선의 변경 고시
 폐지

정선군 제2018- 32호

제19조제1항 또는 제20조제4
 도로법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제21조제3항

지정
 도로 노선을 다음과 같이 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폐지

2018년 3월 14일

정 선 군 수

구 분	<input type="checkbox"/> 지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존	<input type="checkbox"/> 폐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변경
도로의 종류	군 도	군 도
노선번호	6호선	6호선
노선명	예미~용탄	예미~용탄
기점	신동읍 예미리 658-2	임계면 임계리 459-3
종점	정선읍 용탄리 산505	정선읍 용탄리 산167-10
주요 통과지	신동읍 운치리, 정선읍 가수리 정선읍 굴암리	신동읍 운치리, 정선읍 가수리 정선읍 굴암리
총연장(킬로미터)	32.0	29.76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되는 구간	구간	-
	연장 (킬로미터)	-

작성방법

1. 지정국도는 기존 일반국도 노선번호에 "-중 지정국도"를 추가하여 기입합니다.(예시: 일반국도 제1호 중 지정국도)
2. 기점·종점은 행정구역을 읍·면·동 및 지번까지 적고, 주요 통과지 및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되는 구간은 읍·면·동까 지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신문용지 54g/m²)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지정
도로 노선의 변경 고시
 폐지

정선군 제2018- 32호

제19조제1항 또는 제20조제4
 도로법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제21조제3항

도로 노선을 다음과 같이 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폐지

2018년 3월 14일

정 선 군 수

구 분	<input type="checkbox"/> 지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존	<input type="checkbox"/> 폐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변경
도로의 종류	군 도	군 도
노선번호	7호선	7호선
노선명	천포~덕암	천포~덕암
기점	정선군 신동읍 천포리 392-5	정선군 신동읍 천포리 392-5
종점	임계면 덕암리 336-10	임계면 덕암리 336-10
주요 통과지	신동읍 예미리, 남면 문곡리, 사북읍 사북리, 화암면, 물운리, 임계면 덕암리	신동읍 예미리, 남면 문곡리, 사북읍 사북리, 화암면, 물운리, 임계면 덕암리
총연장(킬로미터)	32.43	37.69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되는 구간	구간	신동읍 가사리, 남면 문곡리 남면 무릉리, 사북읍 사북리
	연장 (킬로미터)	20.8

작성방법

1. 지정국도는 기존 일반국도 노선번호에 "-중 지정국도"를 추가하여 기입합니다.(예시: 일반국도 제1호 중 지정국도)
2. 기점·종점은 행정구역을 읍·면·동 및 지번까지 적고, 주요 통과지 및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되는 구간은 읍·면·동까
지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신문용지 54g/㎡)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지정
도로 노선의 변경 고시
 폐지

정선군 제2018- 32호

제19조제1항 또는 제20조제4
 도로법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제21조제3항

도로 노선을 다음과 같이 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지정
 폐지

2018년 3월 14일

정 선 군 수

구 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지정 <input type="checkbox"/> 기존	<input type="checkbox"/> 폐지 <input type="checkbox"/> 변경
도로의 종류	군 도	
노선번호	8호선	
노선명	숙암~단임	
기점	북평면 숙암리 산400-1	
종점	북평면 숙암리 산 1	
주요 통과지	-	
총연장(킬로미터)	8.73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되는 구간	구간	-
	연장 (킬로미터)	-

작성방법

1. 지정국도는 기존 일반국도 노선번호에 "-중 지정국도"를 추가하여 기입합니다.(예시: 일반국도 제1호 중 지정국도)
2. 기점·종점은 행정구역을 읍·면·동 및 지번까지 적고, 주요 통과지 및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되는 구간은 읍·면·동까지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신문용지 54g/m²)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지정
도로 노선의 변경 고시
 폐지

정선군 제2018- 32호

제19조제1항 또는 제20조제4
 도로법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제21조제3항

도로 노선을 다음과 같이 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지정
 폐지

2018년 3월 14일

정 선 군 수

구 분	<input type="checkbox"/> 지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존	<input type="checkbox"/> 폐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변경
도로의 종류	군 도	군 도
노선번호	9호선	9호선
노선명	유평~구절	유평~구절
기점	남면 유평리 740	남면 유평리 740
종점	여량면 구절리429-2	여량면 구절리429-2
주요 통과지	화암면 화암리, 화암면 북동리 임계면 고양리, 임계면 반천리 여량면 남곡리	화암면 화암리, 화암면 북동리 임계면 고양리, 임계면 반천리 여량면 남곡리
총연장(킬로미터)	58.3	60.25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되는 구간	구간	화암면 화암리, 화암면 석곡리 임계면 송계리, 여량면 구절리
	연장 (킬로미터)	3.89

작성방법

1. 지정국도는 기존 일반국도 노선번호에 "-중 지정국도"를 추가하여 기입합니다.(예시: 일반국도 제1호 중 지정국도)
2. 기점·종점은 행정구역을 읍·면·동 및 지번까지 적고, 주요 통과지 및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되는 구간은 읍·면·동까지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신문용지 54g/㎡)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18-278호

정선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공고

정선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과 이에 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03월 13일

정 선 군 수

1. 공람목적 : 성신미네필드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결정(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2. 정선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 계획관리지역 19,772㎡ ⇨ 37,076㎡(증 17,304㎡)
 보전관리지역 1,217㎡ ⇨ -㎡(감 1,217㎡)
 농림지역 16,087㎡ ⇨ -㎡(감 16,087㎡)
 -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안)
 - 성신미네필드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신설) : 37,076㎡
 - 다.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 성신미네필드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 세부내용 게재생략(공람장소 비치)
 - 라.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 게재 생략(공람장소 비치)
3. 관련도서 비치 및 열람장소 : 정선군 도시건축과, 남면사무소
4. 공람기간 : 신문게재일로부터 14일간 (2018. 03. 13 ~ 2018. 03. 27까지)
5. 의견제출 방법 및 장소 : 공람 기간내 정선군 도시건축과에 서면제출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선군 도시건축과(☎ 560-2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공고 제2018-302호

「정선군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3월 16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현재 토요일 및 공휴일 당직근무자는 대체휴무가 곤란하고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해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활기찬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재택당직에 대한 정의를 신설(안 제3조제4호)
- 나. 당직(숙직 및 일직)종료 후 토요일 및 공휴일일 경우 다음 정상 근무일로부터 5일 이내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는 규정(안 제5조)
- 다. 당직근무 편성 제외자 신설(안 제6조제7항)
- 라. 재택당직 근무규정 보완(안 제8조제4항 및 제5항)

3. 입법예고 기간: 2018. 3. 16. ~ 4. 6.(21일간)

4. 일부개정규칙(안):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6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1) 주 소: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자치행정과
- 2) 전 화: 033-560-2231
- 3) 팩 스: 033-560-2590
- 4) 이 메 일: bychwo@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당직 및 비상근무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선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재택당직자” 이라 함은 토요일, 공휴일 또는 일과 근무시간 이후 자택 등에서 비상연락망을 유지한 채 당직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 에 대하여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근무 종료 시간이 속하는 날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일직과 숙직 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5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직근무 대상자가 임신 중이거나 미취학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 또는 중증 장애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편성 제외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당직근무 제외신청서를 당직명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당직명령자는 당직근무 제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재택당직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당직자가 귀가 시 다음 각 호의 비품을 휴대하게 하여야 한다.
 1. 이동전화
 2. 당직일지(사무실 비치)
 3. 부서별 전화번호
 4.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및 당직실 전화번호
 5. 직원 비상소집명부
- ⑤ 재택당직자는 귀가 후 다음날 08:00까지 조기 출근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근무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연으로 일직근무자와 인계인수 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정선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p> <p>제3조(정의) (생략) 1. ~ 3. (생략) <u><신설></u></p> <p>제5조(숙직자의 휴무) <u>숙직근무자</u> ----- ----- -----.</p> <p>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⑥ (생략) <u><신설></u></p>	<p style="text-align: center;">정선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p> <p>제3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u>“재택당직자”이라 함은 토요일, 공휴일 또는 일과 근무시간 이후 자택 등에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 채 당직근무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u></p> <p>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u>당직근무자</u> ----- ----- -----<u>. 다만, 일</u> <u>직과 숙직 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u> <u>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5</u> <u>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u> <u>수 있다.</u></p> <p>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⑥ (현행과 같음) ⑦ <u>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직근무 대상자가 임신 중이거나 미취학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 또는 중증 장애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편성 제외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당직근무 제외 신청서를 당직명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당직명령자는 당직근무 제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p>

[별지 제1호 서식]

당직근무 제외신청서

신청자 인적사항			사 유	제외기간	비 고
부 서	직 급	성 명			

「정선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6조제7항에 따라 당직근무 제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정선군수 귀하

관계법령 및 참고자료 발췌

□ 관계법령 발췌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7. 07. 26.

제1조~제3조(생략)

제4조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②(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4.25.>

-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동의를 있는 경우

○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④(생략)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6.03.09., 2015.04.15.>

○ 정선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당직사령"이라 함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요일 및 공휴일의 지역단위 당직사령 운영에 따른 당직 근무자 또는 군 본청의 평일 당직근무 총괄 지휘자를 말 한다.
- 2. <삭제 2001.12.03>
- 3. "당직보좌관"이라 함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제5조(숙직자의 휴무) 숙직근무자에 대하여는 그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12.26.>

제8조(당직신고 및 인수인계)

-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04.07, 2008.04.14>
-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는 이를 당직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 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호의 당직결과 상황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04.07,2008.04.14>

- 1. 야간사건, 사고발생 상황
- 2. 야간민원, 문서처리 상황
-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 4. 기타 중요한 사항 <신설 1987.03.30.>

□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발취

○ 강원도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게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7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별칙 적용으로 편성된 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8·30, 2015. 7. 10, 2017.11.10.>

○ 춘천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시행 2017.11.30.]

제3조(정의)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생략)

- 3. “재택당직”이라 함은 일과시간 종료한 때부터 다음날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사무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3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4·24, 2003·9·5, 2017.11.30.>[제목개정 2017.11.30.]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근무여건 및 치안상황에 따라 이를 증원할 수 있다.<개정 2002·4·24>
- ③ 청사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위, 청원경찰, 운전원,청소부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④ 직속기관·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은 당해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소속기관의 장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02·9·2>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수립
3.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직근무 대상자가 임신 중이거나 미취학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 또는 중증 장애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편성 제외 요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당직근무 제외신청서를 당직명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당직명령자는 당직근무 제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30.>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기간 1시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 날인 정상근무일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4·24, 2017.11.30.>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등 필요한 당직실 비품을 인수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호의 당직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야간 사건 사고발생 현황
2. 야간 민원 및 문서처리 현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기타 중요한 사항

④ 재택당직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당직자가 사무실에 일정기간 대기 후 귀가 시 다음 각 호의 비품을 휴대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02·9·2>

1. 당직용 이동전화
2. 당직일지
3. 실과소별 전화번호

- 4.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 5. 직원비상소집명부
- 6.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 동해시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시행 2017.12.29.]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3(생략)

- 4. “재택당직”이란 일과시간이 종료한 때부터 다음날 근무가 개시 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5.15.>

제5조(숙직근무자의 휴무)

④ 재택당직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당직자가 사무실에 일정시간 대기후 귀가시 다음 각 호의 비품을 휴대하게 하여야 한다.

- 1. 이동전화
- 2. 당직일지(사무실 비치)
- 3. 실과소별 전화번호
- 4.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 5. 직원 비상소집 명부
- 6.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 청주시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시행 2017.12.29.]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12.29.>

-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동의를 있는 경우

정선군 공고 제 2018-30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정선군에서 시행하는 『군도2호(은향골) 도로개설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을 위해 「도로법」 제2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3. 19.

정 선 군 수

1. 사업의 개요

- 사업기간(예정) : 2018. 3. ~ 2018. 12.

사업의 종류및명칭 (사업명)	사업예정지 (위치)	사업내용	사업시행자의 명칭 (성명) 및 주소
군도2호(은향골) 도로개설공사	강원도 정선군 남면 광덕리~남 면 광덕리	○연장: 0.540km ○폭원: 8.5~10.0m ○면적: 11,310m ²	정선군수/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군도2호선(은향골) 도로개설 따른 공사 시행

3. 공람장소, 공람기간

사업명	열람장소	열람기간
군도2호(은향골) 도로개설공사	정선군청 안전건설과 (토목팀)	2018. 3.19 ~ 2018.04.02.(15일간)

4.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18. 3. 19. ~ 2018. 4. 2.(15일간)
-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5. 도로구역 예정지의 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 열람장소 비치(게재생략)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안전건설과 (☎ 033-560-24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